

울산광역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제 1501 호 2021. 04. 15.(목)

규 칙

- 울산광역시 규칙 950호(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) 3
- 울산광역시 규칙 951호(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) 5

입법예고

-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-26호(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) 17
-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-27호
(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) 47
-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-28호
(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) 54

고 시

-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-87호(나무병원 등록취소 고시) 59
-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-88호(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고시) 60
-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-89호(울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내용(변경) 고시) 61

공 고

-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-577호(건설기술용역업사업자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고) 68
-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-579호(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공고) 69
-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-580호(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 공고) 70
-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-581호(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) 71
-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-585호(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) 80
-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-586호(산업단지개발사업 (강양우봉 1지구 조성사업) 준공인가 공고) 81
-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-587호(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공고) 101
-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-591호(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) 102
-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-593호
(울산·미포국가산업단지(효문공단) 사업구역외 도로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) 104
-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-598호(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 공고) 109
-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-603호(반천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매도공고) 110
-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-606호(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사항 공고) 120

발행: 울산광역시 편집: 대변인실 (☎229-2043, 행정 2043)

안 내 문	2003년 1월 1일부터 공보전문(全文)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로 24시간 공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 ※ 전자공보 확인 방법 시 홈페이지(www.ulsan.go.kr)→시정소식→공보에서 열람 ○ 접속관련 기술적인 문제해결은 052) 229-2352로 문의
----------------------	---

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조합 공고 제2021-01호

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

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-189호(2009.05.28.)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-98호(2020.04.16.)로 개발계획(변경) 수립,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-89호(2020.05.28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,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-296호(2021.03.11.)로 공사완료 공고된 『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』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4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15일

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조합 조합장

1. 사업의 명칭 :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
2. 시행자 :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조합 조합장 이 정 창
3. 시행기간 : 2010. 10. 28. ~ 2021. 4. 27.
4. 사업면적 : 406,847.6㎡
5. 환지처분 : 2021. 4. 15.
6. 사업비 정산내역
 - 가. 세입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금 액	비 고
계	104.048	
체비지 매각대금	96.691	· 총 51필지(공동주택 3필지, 학교 1필지, 주차장 4필지, 준주거 6필지, 단독주택 37필지)
환지청산 징수금	7.357	·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감정평가 반영 · 과도환지 청산금 징수

나. 세출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금 액	비 고
계	104.048	
공 사 비	42.792	· 구역내 공사비 : 41,409백만원 · 구역외 공사비 : 1,383백만원
보 상 비	6.213	· 구역내 지장물 보상비 : 5,200백만원 · 대3-41호선 토지보상비 : 1,013백만원
조 합 운 영 비	2.050	
각 종 부 담 금	11.506	· 농지보전부담금, 하수원인자부담금 등
기 타	10.839	· 설계비, 용역비, 대2-21호선 예치금 등
환지청산 교부금	30.648	·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김정평가 반영 · 부족도환지 및 금전청산 청산금 교부

7. 체비지 매각대금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면적(m)	금 액	비 고
합 계	93,572.2	96,691	· 총 51필지
체비지 매각금액	85,642.6	83,159	· 총 31필지(공동주택 3필지, 학교 1필지, 주차장 4필지, 준주거 3필지, 단독주택 20필지)
미 매각 체비지 예정가액	7,929.6	13,532	· 총 20필지(준주거 3필지, 단독주택 17필지)

8. 기타사항

가.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대상 토지의 감정평가로 결정된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 후 별도 통지할 것이며, 교부금은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며, 당 조합의 청산금은 사정에 따라 교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나. 환지처분 공고 후 관할부서 및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 완료할 예정이며,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의 권리는 본 공고일부터 소멸됩니다.

다. 환지처분과 관련된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(환지처분조서)할 것이며, 송달받지 못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공고로서 갈음합니다.